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 - 62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4,000백만원
- 융자조건: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담보 필요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서 연 금리 1.5% 지원 대상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 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穀類), 서류(薯類) 등을 기본으로 한 식품원료로서 분류
 - (곡류) 두류(완두, 강낭콩 팥, 녹두 등),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울무, 기장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카사바(타피오카) 등 * 쌀은 제외

※ 융자지원 사업자가 복합영농으로 양곡을 포함한 2개 이상의 품목 지원 시(일례: 콩, 채소 등)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별도 금리 적용

- 융자담보: 「은행법」에 따른 국내 은행 지급보증서, 국내 은행 정기예금, 「보험업법」에 따른 국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국내),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 사업자별 지원 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용자신청 당해 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용자신청 당해 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단, 정책 전략품목(밀·콩·옥수수·카사바·오일팜·배추)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지원, 자부담 30% 이상

2.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 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 승인을 받는 등 용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정책 전략품목(밀·콩·옥수수·카사바·오일팜·배추)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다변화 대상지역(CIS·미주·오세아니아)에 진출한 사업자

4. 사업자별 지원 자격 및 요건

1) 곡물확보형 사업

-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및 「양곡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양곡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1순위: 전락품목(밀·콩·옥수수·카사바)
 - 2순위: 그 외 양곡 * 쌀 제외

2)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1순위: 전락품목(오일팜·배추)
 - 2순위: 「해외농업산림지원개발협력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해외농업자원]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호의 농작물 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5. 자금용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이 건 용자자금은 관계 법령상 위 용도 이외의 사용이 금지된 금전임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용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지원기준 및 사업의무

○ 지원기준

- 이 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도 총 사업 소요액에서 동 정책자금 지원액을 차감하고 지원

○ 사업의무

- 용자금 수령 후 1개월 내 현지 송금
- 용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시설 등의 설치·매입·임차 완료 또는 용자로 지원받은 영농비·운영 자금 등 사용 완료
-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사업 이행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른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의무

[비상시의 정의]

'비상시'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따라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사업 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4. 6.(월) ~ 4. 30.(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메일 발송 요망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6. 4. 30.(목)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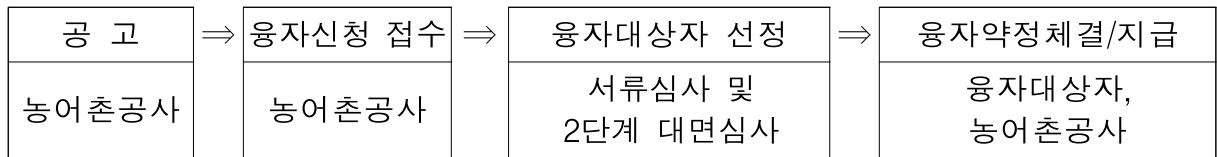
- 문의전화: 061-338-6473, 6474 / e-mail: 2mini@ekr.or.kr

○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아래 [별지 서식] 참조

※ 접수마감일 익월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실시. 단,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8. 용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용자대상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용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 (1차 사전심사) 대면심사(사업계획의 설명, 질의응답), 담보 심사
- (2차 용자심의회) 대면심사(용자심의회 심의·의결, 최종대상자 및 용자한도액 결정)
 - * 1차 심의 통과 사업자에 한해 2차 용자심의회 대면심사 실시
- 용자 대상자 결정 여부는 개별 통보
- 선정된 용자 대상자는 공사와 용자약정서, 담보설정서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할 의무
- 용자금 지급방법: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9. 기타사항

-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령,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련 지침에 따름
- 용자 신청자는 용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용자대상 심사에서 제외
- 용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용자금은 회수 조치 되며, 해외농업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용자대상자 결정 후, 용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절차를 거쳐 용자금이 지원됨
 - 용자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용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 최종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용자결정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용자약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용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용자결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용자신청을 제한함
- 신용조사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작성, 편철하지 않을 것
- 용자신청 시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려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별지 서식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용자(대출)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전화번호 :)		
	2. 대 표 자			
	3. 주 소			
	4.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5. 신고 수리일	
	6. 사업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7. 정책사업 참여실적	<input type="checkbox"/> 민간환경조사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해외인턴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개요	8. 사업명칭		
9. 대상품목				
10. 사업장 소재지		11. 부지면적	m ²	
12. 부지확보방식		<input type="checkbox"/> 매매 <input type="checkbox"/> 임차 (기간 : ~)		
13. 현지사업자				
14. 투자방법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합작	14. 참여지분비율	%
자금소요	15. 해외 합작투자자			
	16. 전 기간 총 사업비			
	17. 신청기간 총 사업비			
	18. 신청인 부담액			
	19. 용자 신청금액			
	20. 담보종류	<input type="checkbox"/> 지급보증서 <input type="checkbox"/> 이행/지급보증증권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상장유가증권(등록국채/기명지방채) <input type="checkbox"/> 정기예금		
21. 대상 사업 관련 정부 지원 여부	본 신청인(기업)은 용자 신청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 융자금 등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p>「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을 용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6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상호 :</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자 : (인)</p> <p>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p>				
첨부서류	1.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업계획서(50쪽 이내)			
	4.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5. 현지사업자 관련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6.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관련 등)			
	7.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8.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9.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10.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분	기 준
용 자 (대 출) 신 청 서	<p style="text-align: center;"><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용자(대출)신청서></p> <p>1.~3. 신청기업 기본사항 작성: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p> <p>4.~5. 해외농업자원개발신고여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개발 신고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신고담당자 061-338-6475)</p> <p>7. 정책사업 참여실적: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등 참여실적 표기</p> <p>10. 사업장소재지: 주 사업장 소재지(농지, 가공시설 소재지 등)</p> <p>13. 현지사업자: 현지 법인 명칭(영문 표기)</p> <p>16. 전 기간 총 사업비: 해당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p> <p>17. 신청기간 총 사업비: 용자금 집행기간의 총 사업비</p> <p>18. 신청인 부담액: 신청기간 총사업비 중 신청인 자부담금</p> <p>19. 용자신청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공정위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사업자, 이하 대기업) 지원 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단, 정책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적용 <p>20. 담보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 <u>용자금의 105%</u> ** 부동산: <u>용자금의 130%</u>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로 인정, 물건별 상이) <p>21. 대상사업 관련 정부지원여부: 해당 프로젝트 관련 정부기관에 자금 지원받은 이력 여부표시</p>

	<p>1.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 농식품부에서 발송한 공문 형태</p> <p>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 * 반드시 원본 제출하며 발급 후 3개월 이내분만 인정</p> <p>3. 사업계획서: 첨부된 「작성양식 1」에 따름</p> <p>4. 주주명부(법인인 경우)</p> <p>5. 현지사업자 관련증빙 * 현지사업자의 설립여부, 현지법인의 대표, 설립일, 자본금, 지분관계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 *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일 경우): 합작사/합작사업 관련내용, 기간, 투자 총액과 지분관계, 소유권관계, 이익과 손실분배, 합작사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자금운용·세무·금융·회계감사 내용, 계약의 수정·변경·해제 관련 내용, 법률관계 등</p> <p>6. 사업추진 관련증빙 * 토지 임차/매입계약서 등: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기간, 금액, 상대자 등 표시되어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서, ESG 관련 등</p> <p>7.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사업계획서상 집행계획 작성 및 기타 관련 서류(구매계획 등)</p> <p>8. 담보확보 관련증빙 가. <u>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u> 등: 보증가능 확인서(은행, 보증보험사 등) 나. <u>부동산</u>: 소유자 인감날인한 부동산 담보확약서(공사양식[작성양식2]),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부동산 담보 감정평가 금액의 담보 인정 비율 - 토지(나대지): 감정평가액의 70% 이내 - 건물(대지 포함): 주거용(오피스텔 제외) 70% 이내, 비주거용 50% 이내</p> <p>9.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 * 수입신고필증(관세청)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제출</p> <p>10. 개인 정보 활용 및 이용 동의서(작성양식3)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작성양식4)</p>
<p>첨 부 서 류</p>	<p>공통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은 원화(백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타국통화 병기 가능(적용환율 기재)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주주명부, 현지사업자 관련증빙, 사업추진 관련증빙 등)는 반드시 번역 공증본 제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관련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편번호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061-338-6473, 6474)

[작성양식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용자 사업계획서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 사업자 소개

1.1 국내사업자 개요

- 상 호 :
- 대 표 자 :
- 설립년월일 :
- 직 원 수 :
- 주요사업 소개

-
-

1.2 주요 주주현황

주주명	투자지분	비 고
A	50%	주주의 특이사항
B	30%	
합 계	100%	

※ 주주명부, 정관 등 관련증빙 첨부

1.3 해외사업 추진경험

○

□ 프로젝트명 :

- 대상국가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주요성과

-
-

2. 사업준비 현황

2.1 사업추진 배경

- 사업추진 배경
 -
 -
- 사업추진 경위 (※ 현지조사, 법인설립, 허가, 생산개시, 지분이전 등을 기재한다.)
 - 2000. 00. 00. :
 - 2000. 00. 00. :

2.2 현지사업 추진여건

(※ 기후, 교통, 전력, 임금, 유통, 시장상황, 세제 등 진출을 위해 사전 검토된 현지투자 여건을 기재한다.)

- 기후여건
 -
 -

2.3 현지사업자

□ 현지법인 (※ 현지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첨부)

- 상 호 :
- 대 표 자 :
- 사무소 소재지 :
- 직 원 수 :
- 주요 주주 현황 :

주주명	국 적	투자지분	비 고
A		50%	주주의 특이사항
B		30%	
합 계		100%	

- 특이사항
 - 운영권자, 이사회 주주총회 구성 및 의결 기준 등
 -

□ **현지 파트너** (※ 합작투자자 등 현지 사업파트너 있을 경우 현황 기재)

- 상 호 :
- 대 표 자 :
- 사무소 소재지 :
- 직 원 수 :
- 주요사업 소개

-
-

2.4 추진인력 (※ 현시점 기준 용자신청사업 관련자)

구분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및 주요 경력
합 계			00명	
국내 법인	○○	상무	홍길동	국내사업 총괄 농업경제학 박사('95) 캄보디아 ○○사업 총괄('00)
	○○	과장	고길동	
현지 법인				
현지 파트너				

2.5 토지확보

(※ 현시점 계약 완료된 토지에 한함, 계약 건별로 작성)

□ 대상부지 1 ※ 계약서, 등기부 등 관련서류 제출

○ 대 상 지 :

주 소	면적	권리자	현재 토지이용
계 (00필지)			

○ 면 적 : (m²) (계약서 상 면적 표기하며, m² 환산 병기)

○ 확보방식 : 임대 혹은 매입

○ 계약체결일 : 2000. 00. 00

○ 임대기간 : 2000. 00. 00 ~ 2030. 00.00 (년간) (임대일 경우 작성)

○ 임대료 혹은 매입가격 :

○ 대상지 위치도 (구글 지도 활용하여 대상지 경계 표시)

- 경위도좌표 :

○ 특이사항

- 개발여건, 계약조건 특이사항, 이면계약 여부 등

-

○ 대상부지 전경

사진1	사진2
부지전경	

□ 대상부지 2

-
-

3. 사업추진 계획

3.1 사업개요

사업계획 소개

- 전 기간 사업추진계획 소개

-
-
-

사진1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유사사례 사진 첨부	사진2

ESG 추진계획 (해외에서 사업 추진 시 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한 활동 및 계획, CSR 등)

- 사회적 가치를 위한 활동 및 계획

-
-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 사업 정상운영에 필요한 전체 시설목록 기재)

구분	시설·장비명	재원	수량	주요용도
기확보	트랙터			
	농기계 창고	10m×30m, 조적조	1동	동절기 농기계 보관
확보 예정				

□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 대비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하여 기재 (사전조사, 설계, 인허가, 원료구매, 시험재배, 장비확보, 생산실적, 유통실적 등)

-

-

-

□ 기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환율 1\$=0000원 적용)

투자시기	세부내역	금액	비고
계			
'23.2월	토지구입 계약금		
'23.6월~	사무실 임대료		3개월 × 00USD

□ 정부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	지원구분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지원액
20xx	용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용자	한국농어촌공사	
	용자	해외산림자원개발 용자	산림조합중앙회	
	보조			

3.2 원재료 등 확보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 자원 확보 계획 :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약, 시설 및 장비도입 등) 및 가공원재료 확보 등)

□ 종자 확보

○

-

-

□ 비료확보

○

-

-

3.3 생산계획

□ 생산계획

- 영농의 경우 연간 주요 영농일정(작기), 재배방법, 향후 확대계획 등 상세 설명
- 가공의 경우 원료확보부터 가공품 생산까지 주요 공정 등 생산 프로세스 소개

-
-

□ 생산목표 (※ 향후 5년간 최종 상품 생산목표)

구분		202x	202x	202x	202x	202x	202x
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품목1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단위생산량(톤/ha)						
품목2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단위생산량(톤/ha)						

□ 인력운영 계획

- 조직구성, 인력운영(정규직 및 일용직 규모), 전문기술인력 확보 등

-
-

3.4 판매계획

□ 주요 판로

- 주 판매처, 향후 수요처 전망 등

-

□ 유통계획 (※ 향후 5년간, 구체적 판로 있을 경우 세부 수요처까지 기재)

구분		202x	202x	202x	202x	202x	202x
품목1	현지판매 계						
	- 수요처1						
	- 수요처2						
	국내반입						
	- 수요처1						
	- 수요처2						
품목2	현지판매 계						
	- 수요처1						
	- 수요처2						
	국내반입						
	- 수요처1						
	- 수요처2						

3.5 수익성 분석

□ 손익추정

(단위 : 백만원, 환율 1\$=0000원 적용)

구분	202x	202x	202x	202x	202x	202x	비고
매출액							
매출원가							
재료비							
노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기타생산경비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운송비							
기타운영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기타영업외수익							
국가용자이자비용							
민간용자이자비용							
기타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손익추정 세부내역

- 매출액
 - 매출액 산출 세부내역 및 관련근거
 -
- 매출원가
 - 매출원가 산출 세부내역 및 관련근거
 -
- 판매관리비
 -
 -

4. 투자계획

4.1 연차별 투자계획

□ 자금조달 계획 (※ 현지법인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x	202x	202x	202x	202x	202x
계							
자본금	소계						
	국내사 출자						
	현지파트너 출자						
차입금	소계						
	정부용자						
	민간용자						

□ 세부 자금조달 계획

- 자본금 조달방안
 - 조달 예정인 자금규모, 예상조달일 등을 명시
 -
- 차입금 조달방안
 - 대출기관, 대출조건, 상환방식 등을 명시

4.2 용자금 등 집행계획

(※ 집행계획은 용자금 수령 후 집행기한 1년간 용자금과 자부담을 포함하며, 자부담은 총 집행액의 30%를 초과하여야 함)

□ 집행계획

구분	총 집행액	공사 용자금	자부담	
			자체자금	외부차입
금액(백만원)				
비율(%)	100%	70%	30%	

□ 세부 집행내역

(※ 집행시기는 용자신청 시점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 산정, 집행항목 및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용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집행시기	집행항목	산정 근거	집행액	비고
계				
202x년 0분기	트랙터 구입	존디어, MT960C(510Hp) 1대		자부담
	종자구입			자부담
	토목공사			자부담
	비료			
202x년 0분기				용자금
202x년 0분기				자부담
202x년 0분기				

※ 견적서 등 집행 세부내역 산정근거 첨부

4.3 담보제출 내역 (국내 담보에 한함)

- 담보종류 : 지급보증서, 지급보증보험증권, 부동산, 상장유가증권, 정기예금
 - (부동산 담보 제출시 작성, 소유자 인감 날인한 담보제공 약약서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함께 제출, 제3자 담보의 약약서 공증 제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계 (00필지)		m ²		
서울시 종로구				

- (기타담보 제출시, 보증기관 및 은행 등과 사전협의 실시하고 협의 결과, 연락처, 담당자 등 기재, 가능한 경우 보증가능 확인서 등 제출)

5. 정책목표 달성효과

5.1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적

(※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등 정책사업 참여 실적 있는 경우 작성, 국내법인 기준, 가점사항)

□ 민간환경조사 실적

- 추진년도: 20xx년
- 정책사업 운영기관: 해외농업개발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 주요내용:
- 조사결과 및 활용실적

-
-

□ **컨설팅**

- 추진년도 :
- 정책사업 운영기관 : 해외농업개발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 주요내용 :
- 컨설팅 결과 및 활용실적
-
-

5.2 국내 반입계획 (국내반입 예정 품목인 경우)

□ **대상품목의 국내 수급 여건**

- 국내 수급여건(수입량, 국내생산량 등), 국내도입 관세, 가격변동, 수요처 등
-
-
- -

□ **반입계획**

- 현지 사업장부터 국내 수요처까지 반입 경로, 방법, 소요기간, 비용, 물류스케줄 등
-
-

□ **국내반입 실적 (최근 3년간)**

품목	연도별 반입실적(톤)				비고
	202x년	202x년	202x년	202x년	
품목1					
품목2					

※ 반입증빙 첨부, 가점부여

5.3 사업추진 기대효과

- 기술수출, 식량안보 기여, 일자리 창출, 전후방산업 동반진출 등

[작성양식 2]

부동산담보 제공에 따른 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00도 00시 00구 00동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20년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담보물건으로 _____을 위하여 제공하며, 융자기업인 _____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하는 융자 약정과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고 본 담보로 제공되는 융자금은 융자신청 시 제출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_____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과 “융자약정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융자기업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융자원리금 및 위약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납 시에는 위 담보 물건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 또는 임의 경매 등의 조치를 하여도 담보권실행의 정지, 취소신청, 소송을 포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명 : (인)

주소 :

- 덧붙임 : 1.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등기부등본 각 1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작성양식 3]

개인 정보 활용 및 이용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신청인은 사업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대상자 요건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사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거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사업책임자, 직위, 이메일주소 등)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본 사업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사업책임자, 직위, 이메일주소 등)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작성양식 4]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 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②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1.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와 염전허가가 없는 염전
2. 용자기간 중 권리소멸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3. 전원의 승낙이 없는 공유 또는 합유의 부동산
4. 환매의 특약이 되어있는 부동산
5. 소송 또는 분쟁 중인 부동산
6. 담보권을 침해할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7. 토지이용계획상 보전녹지, 생산녹지,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
8.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과 부지가 동시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
9.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 공익시설,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또는 영유아 교육시설 부지, 사회복지법인, 향교재산, 납골당, 폐교 등 부동산
10. 오지의 임야 등 환가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11.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물 등
12.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물건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건물
13.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와 그 지상에 있는 입목
14. 압류, 가처분, 매도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환매특약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예고등기, 해제특약등기, 신탁등기, 유치권신고 등 담보권 행사를 저해할 등기 또는 권리가 있는 부동산
15.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지상 건물로 일반관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동산
16. 그 밖에 담보권 실행이나 가치보전에 저해되는 사항이 있는 부동산